

연구직직원 인사관리시행내규 개정 요지

신·구 조문 대비표

1. 개정이유

- 다양한 유연근무제 시행을 권장하는 정부방침 및 2015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연구원을 유연근무확대 시범대상 부서로 선정하여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

2. 개정내용

- 연구직직원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 - 1일 8시간 근무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정도 불구하고 연구직직원의 과업중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선택형 등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사규관리규정 제6조제1항
- 사장방침 제344호, 「연구업무규정시행내규 및 연구직직원인사관리시행내규 개정(안)」(16.04.19.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절 차 : 해당 없음

마. 기타참고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현 행	개정안
제26조(복무) ① 연구직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정 등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위촉직 연구직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규정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26조(복무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 ② (생략) ③ (생략)	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직원은 업무성과 향상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탄력적,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	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◎ 내규 제731호

연구직직원 인사관리시행내규 개정

연구직직원 인사관리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6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,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 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직원은 업무성과 향상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탄력적,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